

- 피의자가 행한 발언만으로 특정 아동을 지속적·반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, 해당 발언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·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'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'로 불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'정서적 학대행위'로 단정하기 어렵다.
- 피의자의 공직선거법위반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, 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에 대한 범죄혐의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.

※ 결정 종류 안내 및 이의·심의신청 방법

<결정 종류 안내>

-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-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.
-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-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,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·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.

<이의·심의신청 방법>

-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(고발인은 제외)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.
- 수사 심의신청 제도(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)
-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관할 시·도 경찰청 「수사심의계」에 심의신청

